

[특집]

##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목적 접촉점 ‘인격적 사랑’\*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몸의 신학」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동 호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사목연구소 소장·신부]

시작하며

1. 회칙 「인간 생명」의 ‘예언자성’과 가치와 한계
    - 1.1. 회칙의 예언자성
    - 1.2. 회칙의 가치
    - 1.3. 회칙의 한계
  2. 「몸의 신학」의 주요 개념들
    - 2.1. ‘인간적 사랑’의 처음: ‘위격들의 친교’
    - 2.2. ‘인간적 사랑’의 성장: ‘몸의 언어’
    - 2.3. ‘인간적 사랑’의 완성: 몸을 선사함
- 마무리하며(사목적 배려)

### 시작하며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첫 경험인 20.4세로 빨라졌고 여성의 초혼 연령은 30.1세로 늦추어져 평균 10년 이상의 피임이 필요해졌다. 그런데도 콘돔 착용과 피임약 복용을 포함한 피임 실천율이 2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의 발언인데 맥락은 이렇

\*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에서 주관한 “『인간 생명』 반포 50주년 기념 — 현 사회의 흐름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생명』의 예언성과 그 가치” 학술심포지엄 (2018.11.10)에서 발표한 논문임. 또한, 이 글은 2018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다. 작년 이맘 때 한 보고서<sup>1)</sup>가 발표되었고 피임[反妊]<sup>2)</sup>실천율은 10년 전 44%였던 것에 비해 20%로 상당히 퇴보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피임[反妊] 사용을 안 한 것이 “여성 건강이 위협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그의 시각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화학 약물과 인공 의약기구의 사용이 줄었으면 건강 위협의 문제가 줄어든 것일 텐데 말이다.

더 놀라운 것은 피임[反妊] 실천율에 있어서 질외사정(61.2%)와 생리주기조절(20%) 등의 자연적 방법들은 무시한 채 오직 콘돔과 피임약 등의 인공적 방법들만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계획임신의 출발점이 피임’[反妊]이라며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서 피임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만혼이 대세가 된 현실을 감안해 피임을 계획임신의 출발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물어보자. 피임약 꼬박꼬박 먹고 피임기구 또박또박 써야만 ‘계획임신’인 것인가? 소위 ‘와이즈우먼’이란 명칭처럼 “건강 관심

1) 2017년 9월 22일 서울대보라매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의 ‘2004-2014 한국 여성성생활’ 보고서. 참조: 『뉴스와이어』(2017.09.22 11:30) at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6764>>.

2) ‘피임’(避妊)이란 우리말은 영어 contraception의 번역으로 통상 사용하지만, 그 뜻은 임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공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임신(fecundation)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반임’(反妊)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하, ‘피임’이라고 쓰고 ‘반임’이라고 읽는 즉, «피임[反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덧붙일 것은 이런 ‘타협적’ 표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의 우리말 번역본(『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개정판> 라틴어 대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sup>2</sup>2002)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개념이며 용어이지만 생물학적 기술이나 의학적 수준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곳이 있기 때문이다. ‘임신’(conception) 개념은 수정 후 약 4일 이후의 배반포(胚盤胞, blastocyst) 단계를 지나 수정 후 7일경 자궁 내막에 착상(着床, implantation)하는 수태(受胎, fecundation/ fertilization)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수정’(insemination) 때부터이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임신이라고 쓰고 수정이라고 읽는, 즉, «임신[受精]»이라는 표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렇게 번역하였다: “[...]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受精]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51항 §3].

갖는 현명한 여성”<sup>3)</sup>에게 또 그런 남성에게, 간단한 교육과 약간의 훈련을 하기만 하면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 자연적 방법들을 배제시키는 저의<sup>4)</sup>는 무엇인가? 간단한 진통제나 소화제

3) <와이즈우먼(wisewoman)>은 ‘건강 관심 갖는 현명한 여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대한산부인과사회에서 운영하는 여성건강정보 공식사이트 명칭이다. 홈페이지 <<http://wisewoman.co.kr>>를 참조.

4) <대한산부인과사회와 함께 하는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 이야기>에 의하면, <자연주기법> 큰 항목의 피임성공률은 “75%”로 도해(圖解)해 놓고 있다. ‘사용하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배란일 추정하기’ 소항목에서 “배란일 전 5일부터 배란 후 2일까지”라고 언급하며 “임신위험기간”을 8일간으로 제시하고 “주기법을 통한 피임은 실패율이 높으므로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만일 임신되더라도 분만이 가능한 경우에만 주기법을 피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고 하는 ‘경고용’ 발언을 첨부한다.

‘점액관찰법’ 소항목에서는 “질염이나 질세척 등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기초체온 측정법’ 소항목에서는 “하지만 배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온 상승이 없을 수도 있고, 기초체온표 결과 배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배란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란 전에는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임을 위하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배란일 추정하기와 점액관찰법과 기초체온 측정법을 ‘삼중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때의 효과와 권고하는 언급은 아예 없다. 다른 피임방법에 대해서는 이중적 삼중적 방법을 권고하면서도 말이다. 예를 들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남성용 피임방법으로서 <콘돔> 큰 항목에서는 피임성공률을 “85%”로 도해해 놓고 이렇게 권고한다: “콘돔 역시 사용 방법에 따른 실수와 콘돔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 피임 실패율이 10% 정도입니다. [...]”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량으로 인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보조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돔은 정액뿐 아니라 성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전염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임방법을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성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돔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실이 아닌 주장을 지적해 보자면, 첫째, 콘돔이 모든 성병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 콘돔의 피임성공률 85%가 의미하는 것은 나머지 15%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피임(反妊)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홈페이지 안에서 큰 항목 <자궁 내 장치와 미레나>에서 “미레나는 [...] 피임(反妊) 성공률은 99% 이상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가역적 (원할 경우 다시 임신이 가능한) 피임법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피임(反妊) 효과를 낸다”[<[http://www.wisewoman.co.kr/piim365/sub\\_030301.html](http://www.wisewoman.co.kr/piim365/sub_030301.html)>(2018.10.20. 검색)]고

라도 약물남용이나 의존성을 염려하고 경고하거늘, 사회적 영향력이 크신 소위 전문가협회와 그 책임자 분이 ‘약물 의존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혹시나 약물 의존성을 높힘으로써 늘어날 판매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올해 7월 25일은 성 바오로 6세 교황성하께서 회칙 「인간 생명」<sup>5)</sup>을 반포하신지 꼭 오십 년이 된 날이다. 이를 기념하면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처한 피임(反妊) 사용의 현실에 비추어 이 회칙이 가지는 예언적 가치를 먼저 그리고 이어서 한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충-대안으로서 제시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성하의 교리교육 「몸의 신학」<sup>6)</sup>이 지닌 가르침을 고찰함으로써 ‘사목적 접촉점’으로서의 ‘인간적 사랑’(또는 ‘인격적 사랑’ 또는 ‘위격적 사랑’ 또는 ‘인간 위격적 사랑’<sup>7)</sup>)의 성

---

소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레나’를 시술받은 지 4개월 된 한 미국 텍사스 여성의 기적적인 임신과 함께 출산 소식이 전해졌다. 자궁 내 장착했던 ‘그 미레나를 손에 쥔 신생 아기’의 사진이 해외언론(Instagram ‘Curlykittycrochet’)에 올라온 것이다. 참고: 정희재, “0.1%의 기적. 99.9% 피임성공률을 뚫고 세상에 태어난 아기”, in 『톱스타뉴스』(2018.1.22.).

5) 바오로 6세, 『인간 생명』, 박은호·정재우 공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sup>3</sup>2018. 더 정확한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1968년 제1판이 발간된 김남수 역본[orig. title: Pauli PP. VI, *Letterae Encyclicae Humanae Vitae*(1968.7.25.), in *Enchiridion Vaticanum*, vol.3(1968~1970), EDB, Bologna, 1977, pp.280~319]에 수록된 「부록: 회칙 「인간 생명」의 준비, 동기, 목적」 부분을 누락시킨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하 *HV*로 약칭해 사용하며 첫 항의 첫 단락인 경우, «*HV*, 1항 §1»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6) 요한 바오로 2세, 『몸의 신학』, 미하엘 발트슈타인 편역(2006년), 이동호 줄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orig. title: John Paul II,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translated in English and edited by Michael Waldstein, Pauline Books & Media, Boston(MA), 2006].

이하 *TOB*로 약칭해 사용하며 *TOB* 본문이 첫 번째 교리교육의 첫 번째 항인 경우, «*TOB* 1:1»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7) 개념들의 엄밀한 구별은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통상 ‘인간적’(human)이라는 의미는 ‘동물적’(animal)이라는 의미 또는 ‘신적’(divine)이라는 의미의 반대적 개념 또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의미를 지닌 (인간) ‘위격적’(personal) 또는 ‘인격적’ 또는 ‘인간 위격적’이라고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통상 ‘인격’이라고 번역해 사용하는 영어 «person»(라틴어 «persona»)은 엄밀히 ‘위격’

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그치되, 윤리신학적인 판단 부분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해를 구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특성상 남녀 간의 예민한 영역이 다뤄지고 표현될 것이지만 특정한 개인·성별·집단·계층 그 누구에게도 모욕이나 폄하하려는 의향은 조금도 없음을 밝혀둔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존칭이나 경칭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하며, 또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외국어 표현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피임[反妊]» 방식과 유사하게 교회 문헌들을 우리말로 직역함으로써 곡해될 수 있는 표현들은 괄호 안에 다른 표현을 병기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 부부는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점적인 위격{인격}적 상호 증여를 통하여 위격{인격}들의 친교로 나아간다 [...]»(HV, 8항 §2).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하는 TOB 번역문 중에 <문체부제목돈음체>로 단어나 문장이 도드라진 것은 저자인 요한 바오로 2세가 강조하고자 직접 표시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

이라고 번역해야 하겠다. «human person» 즉, ‘인간적 위격’과도 구별되어야 하고 삼위일체이신 «divine Persons» 즉, ‘신적 위격들’과도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의 TOB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위격들 «Persons» 즉, ‘신격들’과 인간의 위격들 «persons» 즉, ‘인격들’ 간에는 닮음이 있는 바 인간은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과의 그런 닮음을 각각 위격인 부부가 상호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TOB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이다. 정리하자면, 소문자 «persons»일 때는 인간 위격들, 대문자 «Persons»일 때는 신적 위격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communio personarum»은 인간 위격들이 맺는 친교요, «commnio Personarum»은 신적 위격들이 맺는 친교인 것이다.

## 1. 회칙 「인간 생명」의 ‘예언자성’과 가치와 한계

### 1.1. 회칙의 예언자성

#### 1.1.1. 예언자성에 대한 문헌적 조사

하느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는 그 말을 예언(預言, prophetism)이라고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預言者) 또는 선지자(先知者, prophet)라고 할 때, “‘예언자’는 하느님에게서 나온 진리를 인간 말로 표현하는 사람, 하느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분의 권위로 이런 진리를 예언하는 사람”<sup>8)</sup>이고 할 수 있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자신의 배타적 직무로 인해 가장 반대받는 표적 중 하나였다가 마침내 성인으로 조명된 인물, 그는 죠반니 바티스타 몬티니(Giovanni Battista Enrico Antonio Maria Montini) 즉, 교황 바오로 6세일 것이다. 전 생애를 걸쳐 드러난 그의 인품에 대해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복식 강론에서 “예언자적인 증거”(prophetic witness)라고 명백히 표현했다. 두 번이나 반복해 감사도 표현했다:

이 위대한 교황, 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이 지칠 줄 모르는 사도를 볼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중요한 말인 단순한 이 한 마디를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받는 바오로 6세 교황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의 사랑을 드러내는 겸손하고 예언자적 증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sup>9)</sup>

물론, 그를 표현하는 이 “예언자적”(prophetic) 수식어가 전혀 새로

8) TOB 105:2, 607쪽.

9) Pope Francis, Homily “Closing Mass of the Extraordinary Synod on the Family and Beatification of the Servant of God Paul VI”(2014.10.19.), in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1019\\_omelia-chiusura-sinodo-beatificazione-paolo-vi.pdf](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1019_omelia-chiusura-sinodo-beatificazione-paolo-vi.pdf)>, p.2.

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회칙이 반포된 지 이십년부터 “예언”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20년 전 「인간 생명」은 피임[反妊] 이용이 만연하게 되었을 때 혼인과 사회가 겪게 될 것을 “예언했다”(prophesied). [...] 교회는 단지 피임[反妊]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임[反妊]이 잘못된 것이기에 나쁜 결과를 줄 것이라고도 가르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피임[反妊]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무시 될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 네 가지의 다소 일반적인 “예언”(general prophecies)을 해두었다.<sup>10)</sup>

회칙 반포 25주년이 임박했을 때 “「인간 생명」에 따라 행동하도록 사제들을 부르심”을 호소(1992년 4월)한 교황청 가정평의회 위원장 추기경의 ‘예언자성’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구체적이다:

오늘날, 회칙 「인간 생명」의 가치 중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 예언자적 가치는 더욱더 명백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 검토해야 하는”(6항) 이 고통스런 의무를 떠맡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칙은 그 복음적 힘에서 예언자적입니다. 「인간 생명」이 예언자적인 이유는 바오로 6세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 힘겨운 봉사직을 수행하는 하느님의 사자(使者)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사도 5.29). 이것이 참된 예언자의 기본 틀입니다.

회칙 「인간 생명」은 참으로 예언적이었습니다.

[...] 회칙 「인간 생명」은 사랑 없는 우리 시대를 향해 외치는 예언적이고 영웅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랑 없는 성관계를 제안하는 세상에서 「인간 생명」은 진정한 부부 행위는 새로운 생명을 반가이 받아들이는 생명의 사랑이라고 단언합니다.<sup>11)</sup>

10) Janet E. Smith, “Paul VI as Prophet: ‘*Humanae Vitae*’ Made Some Bold Prophecies Two Decades Ago. Did They Come to Pass?”, in *Crisis Magazine*(1988.9.1.) at <<https://www.crisismagazine.com/1988/paul-vi-as-prophet-humanae-vitae-made-some-bold-prophecies-two-decade-s-ago-did-they-come-to-pass>>.

저자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성심 대신학교 윤리신학 교수이며 ‘마이클 맥기브니 신부’ 생명 문제에 서의 석좌교수(Fr. Michael J. McGivney Chair of Life Issues)이다. 이전에는 노틀담 대학교와 달라스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현재 교황청 가정평의회의 고문이다.

아예 제목으로 “예언자적 시각”(prophetic vision)이 등장하고 최근의 미투(#MeToo) 운동<sup>12)</sup>이 피임[反妊] 사용이 확산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인공 피임이 확산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인간 생명」의 특정한 염려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헌의 17항에 명확히 표현된 것처럼, “도덕 기준의 전반적인 저하”와 여성에 대한 존경심 상실이 담겨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춘화는 도처에 있습니다. 이혼, 동거 그리고 아버지 없는 가정 역시도 도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대중 광장은 저명한 한 남성애에 이어서 또 다른 남성이 연루된 성 추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당연하게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실추된 것입니다. 미투(#MeToo)운동은 피임[反妊]이 약탈적인 남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증거 외에 무엇이겠습니까?<sup>13)</sup>

### 1.1.2. 예언자적 책임과 겸손

회칙이 지닌 예언자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저자 역시도 예언자적 운명을 견뎌야 했는 바, 바로로 6세 자신이 직접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생전 처음”인 책임감의 무거움 그리고 사도적 사명

11) 알폰소 로페즈 트루질로 추기경, “사제들이여, 회칙 「인간 생명」의 가르침에 충실하라!”, 『사목』 171(199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6~104쪽[orig. title: Alfonso Card. Lopez Trujillo, *A Call to Priest to Act upon Humanae Vitae*, in: *Familia et Vita*(NO.2/1992), 노희성 번역, pp.20~26].

12) 참조: Helen Alvaré, “#METOO AND HUMANA VITAE”, in *Columbia*(July 2018) at <<https://www.kofc.org/en/columbia/detail/me-too.html>>.

미투(#MeToo)의 섹스(sex)는 “한 위력을 향해 권력을 투사하고자 또는 쾌락을 얻고자 행해진 일련의 성적 본성의 말들과 행위들”라고 요약되고 미투(#MeToo)는 “말들과 행위들이 ‘상호성이 부족하다’ 또는 공동의 목적이 부족한 채 혼자만 좋게 된 것을 말하려는 최고의 축약어(understatement of the year)”라고 표현된다.

저자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Antonin Scalia Law School at George Mason University)의 법학 교수이며 여성스스로말하기(WomenSpeakforThemselves) 운동단체의 공동설립자이다.

13) Mary Tedeschi Eberstadt, “The Prophetic Vision of Blessed Paul VI”, in *Columbia*(July 2018) at <<https://issuu.com/columbia-magazine/docs/columbiajul18en/3>>.

저자는 워싱턴 DC에 있는 Faith & Reason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이다.

의 “끔찍함”까지도 표현할 정도였다:

나는 이제 이 회칙과 회칙을 준비하는 동안에 느꼈던 나의 심정을 꾸밈없이 밝히려 합니다.

첫째로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연구하여 이 회칙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하였던 지난 4년 동안 내게는 이 무거운 책임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런 책임감이 내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스스로의 책임감을 이렇게 무겁게 느껴 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렇게 산더미같이 모여든 논증 앞에서 나는 몇 번이나 당황하였으며, 인간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정하고 선포해야 할 끔찍한 사도적 사명에 스스로의 부담함을 몇 번이고 다시 느꼈습니다 [...].<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인품, 이런 예언자적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빛났다. 그의 시복식(2014년 10월 19일)을 주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받은 칭송도 바로 ‘겸손’의 덕목이었다. 그의 증언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의 사랑을 드러내는 겸손하고 예언자적 증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개인 여정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위대한 키잡이이셨던 그분은 마지막 회기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직무를 위해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보호해주신 것은 제가 특별히 이 일에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교회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에서 제가 교회를 다스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를 위해 제가 무언가를 겪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만이 교회의 안내자요 구원자이심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겸손으로써 복자 바오로 6세의 고결하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였는 바, [...] <sup>15)</sup>

요약해 보자면, 시대를 내다보는 “영웅적 덕행”(heroic virtues)으로 빛나는, 그래서 “가경자”를 넘어 마침내 2018년 10월 14일 “성인”

14) 바오로 6세(김남수 역), “부록”, in *HV*, 43-44쪽.

15) Pope Francis, *op.cit.*, pp.2-3.

(Saint)으로 선포되기에 넉넉한 그런 예언자적 저자였던 것이다.<sup>16)</sup>

## 1.2. 회칙의 가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자료<sup>17)</sup>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1.2.1. 부정적인 예언적 가치

피임[反妊]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 발생하게 될 예언자적 우려들은 이렇다.

첫째, ‘부부간의 불충실과 도덕성의 하락’에 대한 우려이다: “이 분야에서 교회 가르침의 타당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불충실과 전반적인 도덕성 저하로 가는 길이 얼마나 넓고 쉽게 열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 특히 정욕이 강한 젊은이들이 [...] 도덕법 준수를 피해갈 쉬운 수단을 그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HV, 17항 §1).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크게 증가된 이혼, 낙태, 혼외임신, 성행위와 관련된 질병 등의 발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적 간통죄’가 위헌 판정(2015년 2월 26일)을 받은 것을 볼 때, 성적 도덕성이 더 이상 유력한 소송 거리가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이미 예견된 셈이다.<sup>18)</sup>

16) Cf. Christopher Wells, “Pope Francis: Paul VI will be a saint this year”, in *Vatican News* (2018.2.17.) at <<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18-02/pope-francis-paul-vi-canonization.html>>.

의료적 예상을 깬 두 건의 출생 기적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10월 14일 성인으로 선포하였다. Benedetta Capelli, 「교황, 시성미사 “새 성인들은 대충대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이창욱 번역, 『바티칸뉴스』(2018.10.14. 14:14) at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18-10/canonizzazione-paolo-vi-romero-5-santi-messa.html#play>>.

17) Cf. Janet E. Smith, *op.cit.*

18) Cf. *ibidem*.

특히 피임[反妊] 정당화의 근거가 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자유의 권리’와 ‘동거의 권리’와 ‘동성애자의 혼인 권리’의 근거로까지 이어지는 시민법적 변화의 추이를 볼 때 유의미한 상호 관련성을 발견하게 된다.<sup>19)</sup> “더 많은 낙태의 요구”는 가히, “도덕성의 최약대로 하락”한 것이다.<sup>20)</sup>

둘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존중심 상실’에 대한 우려이다: “피임[反妊] 행위가 습관이 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균형을 돌보지 않으며, 여성을 사랑과 존중을 받는 동반자가 아니라 단순히 이기적인 유희의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도 우려할 만합니다”(HV, 17항 §1).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되어 국내외 언론매체를 연일 장식하게 된 이유도 피임[反妊]이 습관화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하여 여성을 그저 이기적인 유희의 도구로 여겼기 때문이며 그런 문화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겠다.<sup>21)</sup>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 논쟁까지 포함해 다른 기회에 더 깊은 연구가 추가되어야 하겠다.

셋째,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우려이다: “도덕적 요구들을 무시하는 공권력이 사용할지 모르는 위험한 무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부에게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을 정부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용한다면,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피임 방법을 국민에게 권장하고 심지어 강요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HV, 17항 §2).

‘가족계획’이란 이름으로 개발도상국가 공권력들에 의해 강제로 집행된 증거들은 헤아릴 수 없이도 많지만 특히 중국에서 1979~

19) Cf. “Contraception and the law: A brief history”, in *Columbia*(2018.7.1.) at <<https://issuu.com/columbia-magazine/docs/columbiajul18en/3>>.

20) Maria Tedeschi Eberstadt, *ibidem*.

21) Cf. Helene M. Alvaré, “#MeToo and Humanae Vitae”, in *Columbia*(2018.7.1.) at <<https://www.kofc.org/en/columbia/detail/me-too.html>>.

저자는 미국 Antonin Scalia Law School at George Mason University의 법학 교수이며 ‘여성 스스로 말하기’(WomenSpeakforThemselves) 운동단체의 공동설립자이다.

2016년까지의 ‘한자녀 정책’은 가히 야만적이라 할 수 있는 바, 그 가족계획은 강제 낙태와 비자발적 단종수술로 채워졌다. 더구나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일부 판사들조차도 유죄 판결된 여성들에게 장기적 피임용구를 이식시킨 주정부를 정당화시켜준 적이 있다.<sup>22)</sup>

넷째, ‘자기 몸에 대한 무제한적 지배’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낳는 사명을 인간의 횡포에 노출시키지 않고자 한다면, 자신의 몸과 기능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이 한계를 깨뜨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위에서 언급한 원리들과 저의 선임 비오 12세 교황께서 설명하신 전체성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몸과 그 자연적 기능의 온전성을 마땅히 존중할 때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HV, 17항 §3).

이는 자신의 몸과 기능을 자신의 편리에 따라 조작, 변형, 절단, 제거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단종시술은 물론이고 시험관아기 시술, 안락사,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 활용 등까지 현실로 만든다.<sup>23)</sup>

온전성을 보존하고 온전히 자신을 선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기-지배는 이 예언적 회칙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름 「몸의 신학」의 인격{위격}주의적 가르침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다. 뒤에서 더 다루고자 한다.

## 1.2.2. 긍정적인 예언적 가치: 인간적 사랑

저자가 회칙 반포 직후의 강론에서 강조한 것은 ‘부부 윤리에 대해 제시한 적극성{긍정성}’이다: «사랑과 그 결실에 대한 사명을 밝힘으로써 부부의 윤리를 적극적{긍정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sup>24)</sup>

그런 ‘긍정적 제시’에 대한 올바름과 진정성은 제2차 바티칸 공

22) Cf. Mary Tedeschi Eberstadt, *ibidem*.

23) Cf. Janet E. Smith, *op.cit*.

24) 바오로 6세(김남수 역), “부록”, in HV, 43쪽.

의회 사목현장<sup>25)</sup>의 가르침(HV, 7항 §1 참고)을 따를 때 정당함을 보장받는다. 저자는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부부의 인간{위격}적 사랑의 가능한 조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권고한다:

첫째, 인간 위격은 몸이라는 각자의 생물학적 속성에 매인다는 점이다: «생물학적 과정의 측면에서 ‘책임 있는 부모 됨’은 그 과정의 기능을 알고 존중함을 뜻합니다. 인간 지성은 출산 능력 안에서 인격에 관련되는 생물학 법칙들을 발견합니다»(HV, 10항 §2).

둘째, 부부의 위격적 사랑의 열매인 출산의 문제를 판단하려면 ‘전인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출산의 문제는 인간 삶의 다른 모든 문제처럼 [...] 부분적인 관점을 넘어 인간에 대한 전인적 관점에 [...] 비추어 고려되어야 합니다»(HV, 7항 §1).

셋째, 부부의 위격적 사랑을 위한 최고의 원천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협력도 가능하다는 점이다(HV, 8항 §1과 §2 참조).

넷째, 부부의 위격적 사랑은 ‘완전히 인간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곧 감각적이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이며 [...] 성장합니다. [...] 함께 인간적 완성에 도달합니다»(HV, 9항 §2).

다섯째, 부부의 위격적 사랑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완전히 특별한 형태의 인격{위격}적 우정으로서 [...] 이기적인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공유합니다.»(HV, 9항 §3).

여섯째, 부부의 위격적 사랑은 «죽을 때까지 충실하고 배타적인 사랑입니다»(HV, 9항 §4).

일곱째, 마지막으로 부부의 위격적 사랑은 «결실이 충만한 사랑입니다. [...] “그 본성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HV, 9항 §5).

이렇게 볼 때, 위격적 사랑은 영육으로 된 인간 남녀가 온전히 자신을 상호 선사함으로써 완전한 단일·일치를 이루고 그로 인해

25)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1965. 12.7.),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강대인 라틴어 대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이하 GS라 약칭해 사용하고자 한다.

독점적 성격을 띠게 되며 동시에 그 결과로 이어질 출산의 가능성 까지도 자연스럽게 열어놓는 사랑, 그것이겠다.

그렇다면 그런 위격적 사랑을 맺을 수 있고 또 도달할 수 있는 관계는 혼인하는 남녀 또는 혼인한 부부만이 맺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격적 사랑은 부부의 사랑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의회 현장과 회칙의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개념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부부는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점적인 위격적 상호 증여를 통하여 인격{위격}들의 친교로 나아간다»(HV, 8항 §2. 그리고 참조: GS, 48항 §1; 49항 §1).

### 1.3. 회칙의 한계

정통 교리인 공의회 현장과 전임자들의 전승을 이어야 한다는 것, 고독한 최종 교도권자로서의 인류와 현대의 경험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 그런 중에도 아버지다움의 사목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 삼중적인 구조 속에서 일부의 한계, 그래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첫째, 회칙은 저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학적 설명이 ‘빈약’(slim)하게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조제프 라칭거의 추기경 시절 언급도 있었지만 생물학적 설명을 자주 인용함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전임자 바오로 6세의 판단에 대한 강한 신학적 바닥짐(ballast)을 제공하고자 자신의 교황직 초반부터 TOB를 가지고 교리교육을 실시했고 1981년 혼인과 가정 연구만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게도 되었다는 것이다.<sup>26)</sup>

26) Tracey Rowland, “Foreword”, in Dietrich von Hildebrand, *The Encyclical Humanae Vitae. A Sign of Contradiction. An Essay on Birth Control and Catholic Conscience*, Hildebrand Project, Steubenville(OH), 2018, p.XIII[orig. published: *Die Enzyklika “Humanae Vitae” ein Zeichen des Widerspruchs*, Josef Habbel, Regensburg, 1968].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노트르 데임 대학교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신학부장(호주)을 맡고 있고 2001~2017년 동안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신학대학원(멜버른 분교)>의 원장을 지냈다.

둘째, 회칙은 부부의 위격적 사랑과 관련해 신학적 논리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정에서보다도 더 또는 지나치게 생물학적 질서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이로써 부부의 양심적 선택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켜버렸다는 것이다.<sup>27)</sup> 논란되는 사안들 중에는, 예를 들어, ‘자연법’ 개념에 대한 간극들,<sup>28)</sup> ‘양심의 자유’의 사용 범위,<sup>29)</sup> 그리

27) 참조: 랄프 맥키너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가톨릭의 위기 진단』, 이재룡 역, 가톨릭출판사, 2000, 54쪽(orig. title: Ralph M. McLnery, *What went wrong with Vatican II: The Catholic Crisis explained*, Sophia Institute, Manchester(New Hampshire), 1998), 46-47쪽.

저자는 2010년 81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노트르 데임 대학교의 중세철학 교수, 미스터리 소설 작가, 잡지 *Crisis*의 공동 창간자, ‘자크 마리탱 연구소’(Center)의 소장 등을 역임했다.

거기서 인용된 1968년 7월 30일자 <뉴욕 타임즈>에 2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출판된 찰스 큐란(Charles Curran) 성명서[“Text of the Statement by Theologians”, in *New York Times*(1968.8.31.)] 내용의 일부이다: “[...] 교황청 위원회의 소수자(minority)들의 보고서에서조차도 자연법에 기초하여 인공피임의 부도덕성에 대한 결론적 증거를 제시하려고 시도하는 데에 따르는 심각한 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다른 결합들로서, 부부 관계의 생물학적 측면들을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강조한 점, [...]”

찰스 큐란은 뉴욕주 로체스터의 교구사제(1958년 신품). 당시는 미국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윤리신학(종신자격) 조교수였고 피임 찬성 등으로 1986년 법원에 의해 해직. 현재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감리교)의 ‘인간적 가치’를 위한 Elizabeth Scurlock University 교수로 있다.

28) Cf. Bernhard Häring, “The Encyclical Crisis”, in *Commonweal*(1968.9.6.) at <<https://www.commonwealmagazine.org/encyclical-crisis>>. 여기서 ‘Failure to Distinguish’ 소제목 안에서 열번째 단락은 이렇게 전한다: «제 의견으로는, 「인간 생명」을 「사목현장」과 화해시키는 것은 <종교자유 선언>과 비오 9세의 <오류 목록>과 화해시키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적어도 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1) 막 언급된 그 공의회 현장과 코린토 1서 7장이 솔직히 엄중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인간 생명」 안에서는 솔직히 공의회의 「사목현장」 전체의 자연법 개념과 통합되지 않았다는(incorporated)는 것입니다. 그리고

(3) 출생통제 방법들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그 현장으로부터 산출된 비평기준은 언급도 되지 않았고 솔직히 생물학적인 “법”으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조: 랄프 맥키너니, 같은 책, 54쪽.

29) Cf. Bernhard Häring, *op.cit.*, ‘Obligation to Obey’의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전한다: «의문은 들었습니다: 회칙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양심을 구속하는가? 교황님은

고 ‘혼인 목적들의 서열’에의 유효성, 등이다.<sup>30)</sup>

셋째, 회칙이 기본 원칙을 일률적으로 아니,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신체의 질병 치료’ 사유만을 예외로 두었을 뿐이다: «교회는 항구한 가르침으로 해석된 자연법의 규범을 사람들이 지킬 것을 촉구하며, 모든 부부 행위가 생명 전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HV, 11항). 그리고는 «신체적·경제적·심리적·사회적 조건

이 의문에 대해 모호하지 않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나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기본 원칙들을 폐기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교황님께 신뢰(credit)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사목현장」, 16항). 이 노선을 따라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1) 정직한 양심으로 회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 2) 그리고 자신이 해낼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명확한 양심을 형성하기 위해 회칙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한 추가 정보도 이용해야 합니다.
  - 3) 정직한 양심으로 「인간 생명」의 가르침과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직한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 혼인 부부가 선택한 이유로 그리고 선택한 양심으로 자신들의 마음으로 가장 적당한, 명백히 낙태 방식이 아닌, 그런 산아 제한의 방법을 사용할 때 그들은 그 방법을 고백성사 중에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4) 사제들은 신자에게 교황님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제들이 동등한 정직함을 지닌 자신들 의견을 외칠 권리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 그리고 참조: 랄프 맥키너니, 같은 책, 55쪽.

|            | 『비오-베네딕토 교회법전』(1917년)                                                           |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1983년)                                                                                       |
|------------|---------------------------------------------------------------------------------|---------------------------------------------------------------------------------------------------------------|
| 혼인의 자연적 목적 | 제1013조(혼인의 목적)<br>① 혼인의 <b>제일 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며 제이 목적은 부부간의 상호부조 및 정육 진화</b> 이다. | 제1055조(혼인 목적)<br>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b>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b> 평생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
| 혼인의 계약적 특성 | ②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 및 불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영세자 간의 혼인에 있어서는 성사에 의하여 특별히 강화된다.           | 주 그리스도에 의해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br>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

30) 두 『교회법전』들이 규정한 바를 표로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확실히 드러난다.

들의 측면에서 ‘책임 있는 부모 됨’»(*HV*, 10항 §4)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 단, “신체의 병을 치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HV*, 15항),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출산 기능에 내재된 자연적 주기를 고려하여 비가임기에만 부부 행위를 하도록»(*HV*, 16항 §2)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기간의 주기적 금욕’을 해야 하는 다양한 처지들의 사람들에게는 금욕을 요구하였다: «올바른 출산 조절은 [...] 완전히 자신을 다스리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 부부 생활의 애정 표현이 올바른 질서에 따라 특히 주기적인 절제를 지키며 이루어지도록 금욕을 요구합니다»(*HV*, 21항 §1).

결국은 회칙이 엄격주의자 또는 금욕주의자의 것으로 인식되었고 신자 대중에게는 무시되거나 일부에서는 공개적으로 거부되는 상황까지 일어났던 것이다.<sup>31)</sup>

넷째, 회칙 저자가 사용한 방법과 언어가 현대의 신자 대중이 갖은 정서에 접근하지 못했고 일부 ‘언어적 소통’에 실패한 측면이

31) Cf. Bernhard Häring, *op.cit.*

헤링은 특히 Crowley 부부 등등의 설문응답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정기적인 장기간 금욕’으로 인해 일부 부부들의 화합과 혼인이 위협당할 우려를 강조하였다. 또 “비무류적인 그러나 매우 권위 있는(non-infallible but very authoritative) 교황 선언들”에 있어서 정신심리적 또는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가진 여성들의 처지를 대변하면서 개인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윤리원칙은 올바른 양심에 따라 식별해 실천하도록 권고하였다.

저자는 1998년 8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구속주 수도회 신부로, 로마 아카데미아 알폰시아나 대학원의 윤리신학 교수로 살았다. 특별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문위원(peritus)과 사목헌장을 준비하는 종합위원회(the mixed commission) 및 교황청 출생통제위원회(Papal Birth Control Commission)의 일원을 지냈다.

그리고 Nicole Winfield, “Pope’s Canonization of Paul VI, Romero personal, political”, in *ABC News*(2018.10.13.) at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popess-canonization-paul-vi-romero-personal-political-58473707>>.

이 기사에서는 Monique Baujard(전 프랑스주교회의 가정분과장)가 지난달 바티칸의 여성 잡지에서 “(회칙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는 생활이 부재하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부재한다.”라고 한 언급을 전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톨릭신자들이 피임(反妊)을 하고 있다는 연구들로 볼 때 역대 ‘가장 거부되고 무시된 교황 회칙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있다는 점이다. 몸으로 사랑을 느끼고 부부 협약(pact)을 맺어 그 책임을 이어가는 삶을 학술적인 신학 용어로는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윤리적 지침을 앞세움으로써 현상에 쏠리며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남녀의 속성에 호소하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이다.<sup>32)</sup>

그리하여 신자 대중에게 목적론적 윤리원칙과 교회론적 기준에 입각해 상대적으로 규범적 접근을 했던 HV의 방식보다는 현대의 이혼 현실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적 고독과 인격적 일치로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실존주의적 성경해석과 위격주의적 메시지를 끌어내는 TOB 방식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된 것이다.<sup>33)</sup>

다섯째 마지막으로, HV의 저자는 미리 건의된 TOB 방식마저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기 작가 폴 존슨(Paul Johnson)은 바오로 6세가 HV를 작성하는 중에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랑과 책임』을 독서했고 대단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sup>34)</sup>, 그 형식과 내용을 볼 때, 그런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보여진다.

이 논쟁<sup>35)</sup>은 마렙고(Marengo)<sup>36)</sup>와 가이우즈카(Galuszka)<sup>37)</sup> 간의 문

32) 참조: Charles J. Chaput, "Of Human Life. A pastoral letter to the people of God of northern Colorado on the truth and meaning of married love", in *CNA*(1998.7.22.) at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document/of-human-life-1998-218>>. 번역문을 참조: Charles J. Chaput 대주교, "바오로 6세가 옳았다", 『제5회 아시아·생명·가정대회 자료집』, 천주교대구대교구사목국 사회사목담당·국제생명운동 한국지부 편찬, 16쪽, 10번의 항목.

저자는 당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대교구의 교구장 대주교였고 현재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대교구의 교구장 대주교이다.

33) Cf. Janet E. Smith, "Pope John Paul II and Humanae Vitae", in *International Review of Natural Family Planning* 10(1986/Summer), pp.95~100. 특별히 <The Pope's Approach> 소제목의 pp.98~99를 보라.

34) *Ibidem*, p.97.

35) Ines A. Murzaku, "Paul VI, John Paul II and Humanae Vitae. What did Paul VI have to do with John Paul II in the drafting of Humanae Vitae?", in *Nation Catholic Register*(2018. 7.25.) at <<http://www.ncregister.com/blog/inesmurzaku/paul-vi-john-paul-ii-and-humanae-vitae>>.

저자는 미국 뉴저지 Seton Hall University의 교회사 교수이다.

36) Cf. Gilfredo Marengo, *La Nascita di un'Enciclica Humanae Vitae alla Luce degli Archivi Vaticani*, Libreria Editrice Vaticana, Vaticano, 2018, p.284.

저자는 이탈리아 La Spezia의 교구신부(1979년 신품)이며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현적 해석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발생했는 바, 일단 통상 70년이 지나야 교황 개인(비밀) 문서고에 접근 가능한 기한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외적으로 50년으로 줄여줌으로써 예외적 적용을 받아 문서 접촉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촉발되었다. 핵심은 카롤 보이티야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 신학연구단의 1966년과 1967년 두 번의 결과물, 소위 <Memoriale di Cracovia>가 바티칸으로 보내졌고 참고 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마렝고는 “성좌(la Santa Sede)의 문헌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배제되었다”고 전한다.<sup>38)</sup> 그리고 “그 자료는 이 본문들이 HV의 밑그림에 의미 있게 쓰였다고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이우츠카는 반면, 전반적으로 다 잘 녹아들었고 보이티야의 위격주의적 접근은 특히 ‘인간적 사랑’(참고: HV, 9항 §2)의 모델로서 ‘부부의 사랑’이 제시되었고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회칙 안에 내재하는 인간적 사랑, 그 형식을 결정해 줄 선행한 원칙들 일부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게 해준다.”<sup>39)</sup>

회칙의 저자는 두 가지의 희망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강론을 이렇게 마무리 한다:

[...]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회칙은 본래의 성격상 인간적 진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쉽게 받아들여지리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는 엄격하고 모질다고 여겨지는 나의 말”이 자신들의 사랑을 진실히 대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는

요한 바오로 2세 신학대학원(로마)>에서 신학적 인간학을 가르친다.

37) Cf. Juan José Pérez-Soba/ Paweł Catuszka, *Persona e natura nell'agire morale. Memoriale di Cracovia-Studi-Contributi*, Cantagalli, Siena, 2013, p.382.

38) Gilfredo Marengo, *op.cit.*, p.129: «Dopo un anno e mezzo dal ricevimento della proposta, Paolo VI incaricò Benelli di comunicare a Wojtyła che il testo poteva essere pubblicato in Polonia sotto la sua responsabilità, ma che non era conveniente che lo fosse come documento della Santa Sede».

39) Ines A. Murzaku, *ibidem*: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신분(quality)도 고유한 잠재력(potentiality)도 침해하거나 파괴하거나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분을 깊게 이해하고 적응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완성을 돕도록 집중할 때, 그는 최선을 다 합니다. 동시적으로 이런 본성(nature)을 향한 관계만이 인간 자신을 창조적이게 하고 또한 자신을 완벽하게도 해 줍니다».

희망도 가졌던 것입니다.<sup>40)</sup>

저자의 첫째 희망, “쉽게 받아들여질” 그 희망은 좌절, 아니 거의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의 둘째 희망, “자신들의 사랑을 진실히 대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그의 희망도 요한 바오로 2세의 *TOB*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TOB* 방식의 핵심 개념, ‘위격들의 친교’ ‘몸의 언어’ ‘몸의 선사’를 통해 ‘위격적 사랑’의 의미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몸의 신학」의 주요 개념들

*TOB*, 다시 말해 ‘몸의 신학’<sup>41)</sup>은 그 명칭에서부터 많은 궁금증과 함께 관련된 정보 일부를 제공해준다. 신학이 인간의 ‘몸’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하느님의 말씀이 몸이 되셨다는 사실로 보면, 말씀 드리건대, 몸이 중앙 문을 통해 신학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신성을 대상으로 삼는 과학에 들어온 것입니다(*TOB* 23:5).

그리고 *TOB*의 성격과 목적이 드러나는 다른 명칭도 직접 소개해 준다:

우리가 성경의 이 핵심-본문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의 뿌리 그 자체까지 분석하면서, 우리는 정확히 “몸의 신학”이라 명명될 수 있는 그런 인간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몸에 관한 이 **신학**이야말로 **몸에 관한 교육학**, 즉, 인간에 관한 교육(차라리, 자기-교육)에 관한 가장 적절한 방법론의 기초가 됩니다(*TOB* 59:3).

40) 참조: 바오로 6세(김남수 역), “부록”, in *HV*, 47쪽.

41) 줄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사목 연구』 28(2011/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5-62쪽. 특히 <2.3.3. *TOB*의 목표>의 41-43쪽을 참조.

그리고 이어서,

몸의 교육학이 지닌 목적은 정확히 “애정의 표명들”—무엇보다도 “부부 생활에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그런 표명들”—이 도덕 규칙에 혹은 결정적으로는 위격들이 지닌 존엄성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TOB* 59:7).

여기서는 이 정도로 그치고, 다른 연구 발표된 글들<sup>42)</sup>을 따로 더 참고하기로 하자.

## 2.1. ‘인간적 사랑’의 처음: ‘위격들의 친교’

창세기의 “한처음” 속에서 인간의 본성(자연)에 관한 명제 네 가지를 읽어내는 바, 첫째로 하느님의 상(image of God)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둘째로 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양태를 지녔다는 것, 셋째로 그 둘은 ‘한 몸’이 될 정도로 내밀하게 결합할 것이라는 것, 넷째 마지막으로 그런 둘의 결합은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참조: *TOB* 1:3).

창세기에서 표현된 인간이 닮은 이런 하느님의 상(像)은 두 가지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 첫째 상의 모습은 인간의 ‘세상 다스림’ 행위이다. 하느님의 행위를 닮아 행사하는 것이다(*TOB* 2:4). 그 둘째 상의 모습은 성서에서는 덜 명확하게 언급된 것인데, 바로 “communio personarum/ communion of persons” 행위이다. 즉, 삼위이신 위격들께서 맺으시는 신적 친교(divine communion of Persons)를 닮아 남녀의 위격들이 맺는 위격적 친교(human communion of persons) 행위를 하는 것이다:

42) *TOB*의 본문은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이동호 줄역, 가톨릭대학교, 전체 811쪽>을 참조.

*TOB*의 간추린 내용을 보려면, <이동호 줄역, 『열두 마다의 몸의 신학 안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르침』,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16, 전체 112쪽>을 참조.

‘**위격들의 친교**’ 2. 이런 방식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한 인간의 원초적 일치는 고독의 경계선을 넘는 것으로 표현되며, 동시에 — 인간 존재들에 있어서 — ‘인간’을 구성하는 고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성경의 기사에서 보면, 고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따라 우리가 ‘**communio personarum**’(위격들의 친교)<sup>43)</sup>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치로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 고독 속에서 모든 생명체 animalia로부터 자신을 ‘구별’되는 과정을 통해 위격적 의식을 획득하게 되며, 동시에 그는 창세기가 “자신과 닮은 (비슷한) 협력자”(창세 2,18.20)로 정의하는 자신과 유사한 존재를 향해 스스로를 개방합니다. [...] (TOB 9:2).

만일 역으로 우리가 야훼스트 본문의 기사에서 “하느님의 상(像)”의 개념을 찾아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그저 자신의 인간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남자와 여자가 시초부터 형성하는, 위격들이 맺는 친교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상(像)이 된다고** 연역할 수 있습니다. 상(像)의 기능은 모형(模型)을 반영하고 자신의 원형(原型)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독의 순간에 친교의 순간만큼 하느님의 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처음부터” 그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분의 **위격**이 지닌 고독을 반영하는 상(像)만이 아닙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세 분이신} **위격들**께서 맺으시는 불가사의한 신적 친교의 상(像)이기도 합니다.

[...] 바로 이 일치 전체에 시초부터 인간적 출산과 연결된 풍요의 축복이 내려졌던 것입니다(참조: 창세 1,28)(TOB 9:3).

이런 관점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라고 고백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카르멜식 위격주의에게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44)</sup>

## 2.2. ‘인간적 사랑’의 성장: ‘몸의 언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남이 모르게 하는 대화’ 밀어(密語)이거나 ‘꿀처럼 감미로운 대화’ 밀어(蜜語) 또는 이 둘이 모두 담

43)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셨으며’(창세 1,27), 남녀의 결합이 위격들의 친교(인간 사회)에 대한 최초 형태를 이루었다”(GS, 12항).

44) 참조: 미하엘 발트슈타인, 『몸의 신학 입문』, 이병호 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49-67쪽. 특히 각주 37번을 참조.

긴 의미로서 ‘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감미로운 대화’를 의미할 수 있겠다. 몸의 언어를 통해 그 위격적 사랑은 성장한다.

## 2.2.1. ‘몸의 언어’의 기능 네 가지

아가서를 중심으로 주석하면서 몸이 만들어내는 말, 그 ‘몸의 언어’(language of the body)가 지닌 네 가지의 기능을 읽어낸다:

첫째, ‘몸의 언어’를 통해 알게 되는 남녀의 상호적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상기시키신 “한처음”(마태 19,4)의 상태에서 “자기를 닮은 협력자”(창세 2,20)를 알아볼 조건은 오직 그녀의 말과 동작과 몸짓 태도 전체가 표현하는, ‘몸의 언어’일 뿐이다. 또한 그녀를 향해 그이가 다가가는 방법도 또 다른 자신의 ‘몸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 아담의 탄성이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창세 2,23). 한 위격인 몸이 또 다른 위격인 몸을 향해 내적 충동으로서의 ‘상호 이끌림’을 감지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써 서로를 향해 ‘사랑’이 생겨나게 한다. 몸의 언어를 통해 그 사랑이 상호 만족감을 상승하게 한다(TOB 108:6).

둘째, ‘몸의 언어’를 통해 느끼는 남녀 간의 상호적 ‘평화’의 감정이다. 애인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아가 49,10)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게 된다. 두 위격은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공통의 과거와 공통의 소속을 지녔기에 둘의 관계에 대해 타인이 갖는 부정적 시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형제자매로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평화를 얻은 여자”(아가 8,10)일 수 있게 된다.

셋째, ‘몸의 언어’를 통해 느끼는 남녀 간의 상호적 ‘소속감’이다. “그대는 닫혀진 정원, 봉해진 우물”(아가 4,12)이라는 표현을 여성적 자신의 구조 전체에 깊게 감춰진, ‘여성성이 지닌 엄밀한 신비’를 의미한다고 읽어낸다. ‘몸의 언어’를 통해 즉, ‘상호적 자기-선사’를 통해 상대 위격에 대한 ‘내적 불가침성’ 즉, ‘위격적 존엄성’도 발견해 낸다. 그런 가운데 상대에게 서로 소속됨을 알게 되어 “나의 연인은 나의 것”이며 서로에게 “내가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이다(*TOB* 110:8).

넷째 마지막으로, ‘몸의 언어’를 통해 느끼는 남녀의 상호적 ‘접근성’이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 주세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아가 1,7)의 표현처럼, 서로를 탐색하고 근접하려는 경향을 경험하면서 ‘상호적인’ 몸의 언어로써 에로스를 넘어 부르심에 몸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 탐색과 접근을 통해 “저승처럼 극성스럽기”(아가 8,6)도 한 시샘을 넘어 자기-지배(절제)의 강한 모습 즉, “죽음처럼 강한 사랑”(아가 8,6)을 만나게도 된다. 새롭게 읽어낸 ‘몸의 언어’로 ‘정화된 에로스’ 즉, ‘아가페’라는 사랑을 향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이다(*TOB* 113:5).

## 2.2.2. ‘몸의 언어’의 성장성

꼭 강조해야 할 점은 이 ‘몸의 언어’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며 마침내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기에 혼인의 초야때부터 삶과 죽음의 시험(*TOB* 115:2)에도 직면하게도 되지만 기꺼이 부부 서원을 하게도 한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 이제 저는 정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토빗 8,7)라는 말씀에서처럼 ‘전례의 언어’로 성장함으로써 이렇게도 선포하게 해준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례의 언어’는 “죽을 때까지” ‘몸의 언어’를 통해 남녀의 사랑과 신의와 부부의 충실을 발휘하도록 촉진시키고 성장시킨다. 그래서 그 ‘몸의 언어’를 통해 혼인의 단일성(일치)과 불가해소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TOB* 117b:2).

이 대목에서 *TOB* 저자의 사목적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 과거의 그리스도교가 충분히 평가해주지 못했던 부부 사랑과 성(性)에 대해 이제는 충분히 높게 평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마니교적 정신 구조에 있어서 몸과 성(性)이 ‘반(反)-가치’로 있는 반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언제나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던 가치’로 있

습니다»(*TOB* 45:3).

그렇다면 공의회가 언급한 “쉬이 꺼져 버리는 단순한 성애의 경향을 훨씬 초월”하는 “몸과 마음의 표현들”(GS, 49항 §1)에 대해 ‘충분히 평가’해주고 부부 사랑의 기교나 기술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 2.2.3. ‘몸의 언어’의 예언자성

호세아, 예제키엘 등 예언서 안에서의 ‘계약 관계’에 비추어 몸이 지닌 ‘예언자성’(prophetism)을 읽어내는 바, 부부가 ‘몸의 언어’를 통해 ‘상호적인 위격적 선사’를 표현하면 ‘진리’를 말하는 ‘참 예언자’가 되고 반대로, ‘상호적인 소유와 지배’를 표현하면 ‘허위’를 말하는 ‘거짓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다(*TOB* 106:4).

“나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라는, ‘전례의 언어’가 된 ‘몸의 언어’는 부부간의 신의와 순결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범죄 즉, 서로를 선사하는 상호적 성실과 신의를 파괴하는 ‘간음’과 ‘매음’에 대한 단죄도 포함되어 있음을 읽어낸다. 그런 ‘몸의 언어’는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TOB* 104:8).

### 2.2.4. ‘몸의 언어’의 조작 가능성

자연적 생리주기를 이용한 가족계획과 피임[反妊] 사용을 통한 가족계획의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참사랑 안에서 상호적 자기-선사’의 온전성이 담겨있는지 아닌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피임[反妊] 사용은 ‘자연의 힘에 대한 지배’이며 인간 위격을 표현하는 자신의 몸이 ‘조작의 대상’이 되게 하고 몸의 언어를 조작함으로써 위격적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반면, 자연적 가족계획은 ‘자신에 대한 지배’의 표현이며 인간 위격을 표현하는 자신의 몸이 ‘지배의 주체’가 되고 ‘자신에 대한 주인 됨’을 행사함으로써 위격적 존엄성을 보존시킨다(*TOB* 123:1).

그리하여 자연적 가족계획은 성(性)을 지닌 몸을 스스로 지배함으로써, 즉, 온전히 자기-지배를 함으로써 몸의 언어를 통해 상호적 자기-선사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게 한다. ‘한 몸’이 되는 친교를 이름으로써 성사적 표지의 진리를 완성하게 해준다(TOB 123:2).

반면 피임[反妊] 사용을 통한 가족계획은 잠재적 생식력을 인공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즉,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기-지배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한 몸’ 됨의 친교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런 성사적 표지에는 허위가 드러나게 된다. 조작된 몸으로 표현하는 부부의 친교는 비인격적이게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피임[反妊] 사용은 그래서, ‘본질적 악’(essential evil)<sup>45)</sup>인 것이다(TOB 123:7).

꼭 짚고 넘어갈 것은 TOB가 HV 회칙의 규범이 자연법적 규범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성이 진리를 찾을 때 HV의 규범이 자연법의 규범이 되며 ‘속량될 몸에 관한 에토스’<sup>46)</sup>도 된다는 근거가 인간학적이며 윤리적으로 완전히 명백해 진다고 역설한다(TOB 119:5). 그리고 출산 분야에 있어서는 자연의 질서가 자연법이며 올바른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적 질서를 통해 드러난 위격적 창조자의 계획을 생물학적 규칙이라고 환원시켜버리면 그야말로 HV의 믿을 만한 사상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이를 경고한다(TOB 124:6). 이 대목은 HV에 대한 TOB 저자의 강력한 ‘지지’요, ‘확인’인 것이다.<sup>47)</sup>

45) ‘본질적 악’(essential evil) 표현에 대해, 앞에서 인용된 <「사목연구」 28(2011/겨울)> 안에 있는 <손성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에 대한 논평」, 63-67쪽>을 보라. 바로 66쪽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HV 회칙의 원문대로 ‘내재적 악’(intrinsece inhonestum)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한다.

46) ‘몸의 에토스’(TOB 24:3; 48:2 참조)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정결”(갈라 5,16~17)로 얻게 될 ‘몸의 속량’(TOB 42:7)에 대한 설명은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자 한다.

47) 필자 주: 앞의 각주 27번에서 랄프 맥키너니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언급했던, 찰스 큐란 등의 자연법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한 ‘반박 성명서’에 대한 강력한 질책의 의미도 되겠다.

### 2.3. ‘인간적 사랑’의 완성: 몸을 선사함

인간 남녀의 자연은 창조된 그 자체로 이미 선물된 존재이기에 태생적으로 ‘선사’(膳賜)의 속성을 지닌다. 성삼위적 친교의 원천인 ‘사랑’이 반영된 인간, 그 인간의 ‘몸’은 타인에게 자신을 선사해주는 유일한 위격적 주체이다. 그런 몸이 없이는 자기 위격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창조자는 “**사랑이시기**” 때문에(1요한 4,8) ‘무(無)에서 실존(實存)으로 불러내시는’ 분,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인간을 실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그리하여 하느님의 행위로서의 창조는 그저 무(無)에서 실존으로 불러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실존과 세상 안에 인간의 실존을 확립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 *b'ṛē šūl bārā* (창조하다) 즉, 선사(膳賜)도 의미합니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선사, 말하자면, 바로 무(無)로부터 선물이 나오게 하는 선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TOB 13:3).

첫 인간이 여자를 보고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몸(살)에서 나온 몸(살)이로구나!”(창세 2,23)라고 외쳤을 때, 그는 간단히 둘의 인간적 신원을 단언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친 것이 “**보라, ‘위격’을 표현하는 몸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TOB 14:4).

#### 2.3.1. ‘몸을 선사함’: 몸의 혼인적 의미

한처음부터 이중적 양태 즉,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창조된 몸이기 때문에 몸에 담긴 혼인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몸의 ‘혼인적’ 의미에 대한 발견** 5.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존재하고 실존한 것이 복된 ‘한처음’이었다는 것은 바로 ‘혼인적’이라고 불리는 몸의 의미가 이미 계시되었고 발견되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 (TOB 14:5).

### 2.3.2. ‘몸을 선사함’: 자기 인식의 방법

*TOB* 저자의 혜안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런 선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기를 성실하게 선사함”(a sincere gift of self)이야말로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인 것이다. 공의회 현장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창조의 신비 자체가 보여 준 성(性) — 남성성과 여성성 — 을 지닌 그런 인간 몸은 자연적 질서 전체에서처럼, 단지 풍산(豐産) 그리고 출산의 원천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혼인적” 속성 즉, **사랑을 표현할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 위격이 선물에게 하는 사랑**과 그리고 — 이런 선사를 통해 — 자신의 존재와 실존이 지닌 참 의미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아낌없이} 선사하지 {내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없다”(GS, 24:3)라고 덧붙이면서 인간이 가시적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로”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최근 공의회의 그 본문을 상기해 봅니다(*TOB* 15:1).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런 선사 행위는 피임[反妊] 사용과는 양립할 수 없다. 피임[反妊] 사용의 행위는 자기 인격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인 자기 몸의 언어가 조작됨으로써 자기 몸의 온전성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인격적인 행위이며 그래서, ‘본질적인 악’인 것이다(참조: *TOB* 123:7).

### 마무리하며(사목적 배려)

두 예언자가 있었다.

1960년 5월 9일. 인공 합성된 여성호르몬제재인 경구피임약(the pill)이 인류 최초로 판매 허가된 날이다. 그 약이 나오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어느 한 여성이 헤쳐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진정한 신’(神)으로 가장 정중한 숭배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지상 낙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밝혀주

겠다<sup>48)</sup> 이 ‘예언자’는 마거릿 생거였고, 그 자신이 일조한, 소위 ‘여성 해방’의 초기를 바라보며 1966년 9월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반면, 1968년 7월 25일. 그 약이 나옴으로써 험난한 여정을 어느 한 남성이 헤쳐 나갔다. 그리고 그이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 피임 [反妊] 사용이 확산되면 ‘부부간의 불충실은 증가’하고 ‘도덕성은 하락’할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존중심이 상실’될 것이다! 공권력에 의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강제로 낙태·불임시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무제한적 지배’를 주장할 것이다! 그 ‘예언자’는 바오로 6세였고, 자신이 10년 전 예언한, 소위 ‘여성 해방’의 종말을 바라보며 1978년 8월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두 예언자에게 상반된 신념을 심어준 것은 놀랍게도 같은 이유, 바로 ‘낙태’였다. 마거릿 생거는 낙태하다 죽어가는 여성의 처지를 보았다. 그리고는 피임약 개발에 팔을 걷어 붙였다. 반면 바오로 6세는 그 피임약이 낙태를 일으켜 죽어가는 태아(배아)의 상황을 보았다.<sup>49)</sup> 그리고 피임약 반대에 팔을 걷어 붙였다. 누가 거짓 예언자였는가? 누가 참 예언자였는가?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아직 최종 목표의 절반까지 밖에 못 온 느낌이다. 가난해 방을 따로 쓸 여유가 없는 부부, 생리주기와 노동주기와 감정주기가 불규칙한 부부, ‘매달 6일간<sup>50)</sup>의 금

48) Margaret Sanger, *Happiness in Marriage*, Blue Ribbon Books, New York, 1940, pp.121. 126. 217; Mary Shivanandan, *Crossing the Threshold of Love: A new vision of Marriage in the Light of John Paul II's Anthropology*,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Washington DC, 1999, p.188, no.43. 미하엘 발트슈타인, 『몸의 신학 입문 — ‘몸의 신학’에 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에 관하여』, 이병호 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14~15쪽에서 재인용.

49) Cf. Ines A. Murzaku, *ibidem*. 거기 가이우츠키에 의하면, 바오로 6세가 피임사용의 금지를 확신하게 된 이유 중 또 하나는 1967년 「울름의 회보」(*Memorandum di Ulm*: 독일 의사들의 심포지엄 보고서)의 내용 때문이기도 했단다: «정확하게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피임약으로 팔린 경구피임약은 일부의 경우에 낙태를 유발시켰다».

50) 앨런 와이즈먼, 『인구쇼크. 과잉인구시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한음 옮김, 열에치코리아, 2015, 186쪽: «[...] 그러니 언젠가는 세계 기독교인들 — 적어도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 — 의 지도자가 될지도 모를 다정하면서도 지적인 인

육'을 하는 젊고 건강한 부부, 이들에게는 어떤 '사목적 배려'를 할 수 있는가? 부부의 위격적 사랑과 혼인의 보호를 위해 어떤 윤리신학적 판단을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자리, 다른 기회를 기대해 본다.

---

물이, 정자가 배란에 앞서 여성의 몸속에서 최대 6일까지 살 수 있어서 점액, 체온, 달력을 토대로 한 피임법을 으레 헛수고로 만든다는 점을 모른 척한다는 사실이 어색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저자는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대학교 국제저널리즘 교수이다.

## [참고 문헌]

### 1. 교회 문헌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1965.12.7.),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강대인 라틴어 대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 박은호·정재우 공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_\_\_\_\_, 회칙 『인간 생명』, 김남수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sup>1</sup>1993.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1983.1.25.), 한국주교회의교회법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_\_\_\_\_, 『몸의 신학』, 미하엘 발트슈타인 편역(2006년), 이동호 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Pope Francis, Homily “Closing Mass of the Extraordinary Synod on the Family and Beatification of the Servant of God Paul VI”(2014.10.19.), in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1019\\_omelia-chiusura-sinodo-beatificazione-paolo-vi.pdf](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1019_omelia-chiusura-sinodo-beatificazione-paolo-vi.pdf)>.

### 2. 단행본

Dietrich von Hildebrand, *The Encyclical Humanae Vitae. A Sign of Contradiction. An Essay on Birth Control and Catholic Conscience*, Hildebrand Project, Steubenville(OH), 2018.

Gilfredo Marengo, *La Nascita di un'Enciclica Humanae Vitae alla Luce degli Archivi Vaticani*, Libreria Editrice Vaticana, Vaticano, 2018.

Juan José Pérez-Soba/ Paweł Caluska, *Persona e natura nell'agire morale. Memoriale di Cracovia-Studi-Contributi*, Cantagalli, Siena, 2013.

랄프 맥키니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가톨릭의 위기 진단』, 이재룡 역, 가톨릭출판사, 2000.

미하엘 발트슈타인, 『몸의 신학 입문』, 이병호 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앨런 와이즈먼, 『인구쇼크. 과잉인구시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한음 역, 엘에치코리아, 2015.

이동호 줄저, 『열두 마다의 몸의 신학 안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르침』,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16.

### 3. 논문·뉴스·자료집

Bernhard Häring, “The Encyclical Crisis”, in *Commonweal*(1968.9.6.) at <<https://www.commonwealmagazine.org/encyclical-crisis>>.

Charles J. Chaput 대주교, “바오로 6세가 옳았다”, 『제5회 아시아·생명·가정 대회 자료집』, 천주교대구대교구사목국 사회사목담당·국제생명운동 한국지부 편찬.

Christopher Wells, “Pope Francis: Paul VI will be a saint this year”, in *Vatican News* (2018.2.17.) at <<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18-02/pope-francis-paul-vi-canonization.html>>.

Helen Alvaré, “#METOO AND HUMANAЕ VITAE”, in *Columbia*(July 2018) at <<https://www.kofc.org/en/columbia/detail/me-too.html>>.

Ines A. Murzaku, “Paul VI, John Paul II and Humanae Vitae. What did Paul VI have to do with John Paul II in the drafting of Humanae Vitae?”, in *Nation Catholic Register*(2018.7.25.) at <<http://www.ncregister.com/blog/inesmurzaku/paul-vi-john-paul-ii-and-humanae-vitae>>.

Janet E. Smith, “Paul VI as Prophet: ‘Humanae Vitae’ Made Some Bold Prophecies Two Decades Ago. Did They Come to Pass?”, in *Crisis Magazine*(1988.9.1.) at <<https://www.crisismagazine.com/1988/paul-vi-as-prophet-humanae-vitae-made-some-bold-prophecies-two-decades-ago-did-they-come-to-pass>>

\_\_\_\_\_, “Pope John Paul II and Humanae Vitae”, in *International Review of Natural Family Planning* 10(1986/summer), 95~100.

Mary Tedeschi Eberstadt, “The Prophetic Vision of Blessed Paul VI”, in *Columbia* (July 2018) at <<https://issuu.com/columbia-magazine/docs/columbiajul18en/3>>.

Nicole Winfield, “Pope’s Canonization of Paul VI, Romero personal, political”, in *ABC News*(2018.10.13.) at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popes-canonization-paul-vi-romero-personal-political-58473707>>.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하는 와이즈우먼”, [http://www.wisewoman.co.kr/piim365/sub\\_030301.html](http://www.wisewoman.co.kr/piim365/sub_030301.html)>(2018/10/20 검색).

알퐁소 로페즈 트루질로 추기경, “사제들이여, 회칙 『인간 생명』의 가르침에 충실하라!”, 『사목』 171(199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6~104쪽.

이동호 줄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사목 연구』 28(2011/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5~62쪽.

## 국문초록

“반대받는 표적”이었던 바오로 6세 교황의 올바른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이 반포된 지 50주년을 맞았고 이를 기념하고자 열린 사목연구소의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본 연구는 그 회칙이 지닌 예언적 가치와 한계를 살펴보고 후임 요한 바오로 2세의 보완적 교리교육 「몸의 신학」과의 접촉점으로서 “인간적 사랑”을 그 교리교육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회칙은 피임[反妊] 실천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바, 부부간의 불충실과 도덕성의 하락을 예언하였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존중심 상실, 공권력의 남용, 자기 몸에 대한 무제한적 지배 등에 대해 예언하였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예언적 가치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에 기초해 부부 윤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간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인간적이며 위격적인 사랑에 있어서 필연적 요소로서 몸을 통해 공유하고 독점적이며 위격적이고 상호적인 자기 증여를 함으로써 위격적 친교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회칙 자체의 방법론적 한계도 드러났는데, 생물학적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라는, 더 큰 공의회의 목적을 축소시키게 되었고 예외적 사유에 있어서도 부부를 지탱해주는 신체적·경제적·심리적·사회적 필수 조건들보다는 오직 ‘신체적 질병 치료’만을 언급함으로써 신자 대중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신학적 바닥짐(balast)으로서 등장한 것이 성경 전체를 ‘몸’에 대해 위격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직접 교리교육을 해준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이다. 특별히 창세기의 ‘한처음’, 마태오 복음서의 ‘마음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한 성서 해석은 해안이 번득인다. 방법론적으로는 금지·불허 규범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현상

학적 관점으로 남녀의 상호적 결합의 온전성을 창세기의 ‘한 몸’에서 읽어낸다. 인격주의적 관점으로 부부의 상호적 자기 증여를 통한 위격적 친교(communio personarum)가 하느님 성 삼위의 위격적 친교(communio Personarum)를 닮은 것이고 자기를 인식해가는 방법이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현장(24:3)의 가르침과도 연계시킨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조작으로서의 피임(反妊) 사용은 본질적 악(essential evil)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주기적 금욕을 해야 하는 젊고 건강한 부부, 심리적 상태나 직업적 조건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불규칙한 주기를 가진 부부 등에 대한 윤리신학적인 판단과 ‘사목적 배려’ 연구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주제어: 위격, 몸, 부부, 친교, 피임.